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. 4. 9 선고 2022가단291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(탈퇴) A

원고승계참가인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D

변 론 종 결 2024. 3. 5.

판 결 선 고 2024. 4. 9.

주 문

-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D 사이에 2021. 1. 26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을 취소한다.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1. 27. 접수 제2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(탈퇴)는 D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가단33657호로 D이 원고승계참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20. 6. 17.경 배당받은 1억 원 중 7,000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2. 1. 14. D은 원고(탈퇴)에게 7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그 판결은 2022. 2. 4.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(탈퇴)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. 5.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, 2023. 5. 15.경 D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.

다. D은 2021. 1. 26.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. 1. 27. 접수 제29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

원고(탈퇴)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성립하였고, 원고승계참가인의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무자력 여부

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,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(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다211408 판결 참조).

이 사건 증여계약일을 기준으로 D이 무자력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. 먼저 D의 적극재산으로는, 갑 제5호증, 을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D은 2021. 1. 26.을 기준으로 밀양시 E 답 2,971㎡ 중 1/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, 그 무렵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주식 10,500주(액면가 10,000원), G 주식회사(변경 전 상호 'H 주식회사')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주식 22,100주(액면가 10,000원)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다음으로 D의 소극재산과 관련하여서는, 원고(탈퇴)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이외에,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E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조합, 채무자 D, 채권최고액 104,000,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, 2021. 1. 13. 인천세무서장이 위 토지에 관한 D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에서 본 사실을 토대로 D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, D이 보유하고 있던 위 E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가치나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, D의 세금 체납액 등에 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및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,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(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D이 2021. 11. 23.경 G 주식회사의 주식 11,050주를 1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피고는 을 제5호증을 근거로 2022. 12. 31.을 기준으로 F 주식회사의 1주당 가치가 28,443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)에도 불구하고 D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의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,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D이 무자력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나우상

별지